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2월 8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2.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비대면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 문서 중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초본”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5조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대면 발급을 비대면발급으로 유도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수수료의 감면)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총 122종으로 정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조항 신설과 관련된 민원 증명서는 총 12종임.
- 본 조례의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문서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음. “감면”의 국립국어원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으로 되어 있는바, 개정을 통한 조항 신설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일부 서류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구민의 만족도도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구민이 줄어들어 유연하게 행정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 면제로 인한 세입 감소보다 추후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의 폭이 더 넓다고 판단됨.
- 다만, 관내 설치된 총 41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유동 인구가 많고, 상업지역에 속하는 여의동 현장민원실, 여의도역 같은 경우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이용자는 구민이 아닌 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99 호
----------	---------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비대면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중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초본”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5조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12. 14. ~ 2024. 1. 3. / 20일 간):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등록부(폐쇄증명 포함)
3. 제적등본·초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 <u>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u> <u>발급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u> <u>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u> <u>면제한다.</u> <u>1. 주민등록등본 · 초본</u> <u>2. 가족관계등록부(폐쇄증명 포</u> <u>합)</u> <u>3. 제적등본 · 초본</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내역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51,626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51,626천원)
 - 주민등록등·초본(22,679천원), 가족관계등록부(28,724천원),
제적등·초본(223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국 징수와 김현웅
연 락 처	02-2670-3242